

1. 상품 양허

☞ 양측 모두 품목수 기준 10년내 관세 철폐 90% 이상 확보

※ 양측 HS 세번 기준, 표시 차이로 HS 세번 조정시 향후 자유화 수준 미세 변경 가능

- 우리측 수출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국한하지 않고 UAE측 자유화율 전반을 제고

UAE측 주요 양허품목	카테고리	우리측 주요 양허품목
의료기기, 선박용부품, 인삼류, 식물, 과실류, 주요 자동차부품(새시 등), 주얼리, 밸브, 문구, 기타정밀화학제품, 무기류, 김, 멸치(건조) 등	즉시 철폐	대추야자, LNG/LPG, 알루미늄괴및스크랩, 기타식물성유지(카놀라유), 백시멘트, 신발 등
화장품, 방사선기기, 항공기엔진, 기계류, 압연기, 폴리에스테르섬유, 조미김, 오징어 등	5년 철폐	두류, 빵, 꿀, 대리석,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고무제품, 수산부산물(어류기름), 화장품 등
승용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화물자동차, 합성수지, 기타조명기기, 항공기철도차량부품, 원동기, 냉장고, 세탁기, 공기조절기(에어컨), 휘발유, 제트유, 쇠고기, 닭고기, 면류(라면), 전복(활·신선·냉장), 고등어(냉동) 등	10년 철폐	원유, 벙커C유, 합성수지, 합성섬유, 연괴, 알루미늄선,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기타플라스틱제품, 포트랜드시멘트, 버터, 밀가루, 양고기 등
나프타 (5년간 5%→2.5%)	관세 감축	나프타 (5년간 0.5%→0.25%)

□ **[UAE 양허 특징]** 품목수 기준 91.2%, 수입액 기준 82.0%

- **(공산품)** 우리 주력 수출 분야인 자동차·자동차부품, 냉장고·세탁기·에어컨, 원동기 및 밸브, 합성수지 등에서 UAE 관세철폐 확보

- 우리측 주력이자 중동지역 수요가 높은 공산품목에서 UAE와 CEPA 미체결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 기대
- 특히, 자동차는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에서도 관세철폐를 확보,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친환경차 시장 확대

* [GCC측 양허에 포함된 전례가 없으나, 금번 UAE측 양허에 포함된 주요 품목] ▲자동차 및 부품 전품목(즉시~10년 철폐), ▲냉장고 및 부품 전품목(5~10년철폐), ▲에어컨 및 부품(10개 중 9개품목) (10년철폐)

- 기타 ▲합성섬유, 합성수지·석유화학 제품에서 관세철폐 및 ▲나프타에서 5년간 50% 관세감축으로 수출 증진 기대

- **(의료기기·화장품 등)** 우리 수출유망품목(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LED 조명기기 등)의 UAE측 대규모 양허로 중동지역 진출의 발판 마련

* ▲의료용기기·의료용전자기기(73개 중 70개품목)(즉시~10년철폐(과반수 즉시철폐)), ▲의약품(즉시~10년철폐), ▲화장품(즉시~10년철폐(과반수 즉시철폐)), ▲조명기기(10년철폐)

- (농축수산물) [※]쇠고기·닭고기·라면·신선과일·인삼류, [※]조미김, 김, 멸치, 전복 등 주요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UAE 관세철폐 확보
- 쇠고기·닭고기 전 품목, 신선과일, 조제식품 등 폭넓은 농축산 분야 UAE 시장 개방으로 對중동 농·축산 식품 교역의 신시장 개척

※ UAE측 금지·특별관심 품목

- ♦ UAE 포함 GCC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지(Prohibited) 및 특별관심품목(Special Goods)을 운영
 - * ▲(금지품목) 씹는담배, 산동물, 상아, 마약류, 석면제품, 페타이어 등
 - ▲(특별관심품목) 전자 및 제조담배,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유지 등), 주류 및 주류포함식품
- ♦ 우리측 對UAE 담배수출은 전체 對UAE 수출의 8.8%로 큰 비중을 차지하나, 협상 대상에서 원칙적 배제

□ [우리 양허 특징] 품목수 기준 92.8%, 수입액 기준 72.2%

- (공산품) 원유·석유화학제품 등 UAE 주력 생산품 관세 철폐
 - 원유 관세철폐로 ▲우리 정유산업 원가경쟁력 및 석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 전반의 가격 경쟁력 제고, ▲원유 공급망 다변화 효과 기대
 - 원유 외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은 국내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일부 소수 품목만 장기 관세철폐로 개방
 - * ▲석유제품(휘발유, 제트유, 경유, 윤활유, 중유 81개 품목 양허제외, 23개 중유, 윤활유, 벙커씨유 10년 철폐), ▲석유화학제품(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11개 품목 및 합성고무 등 10년 관세철폐)
 - 나프타는 상호주의로 5년간 50% 관세감축(0.5%→0.25%)에 합의
- (농축수산물) 대추야자, 식물성 기름, 바이오 디젤, 어류 기름 등 관세철폐
 - 국내 생산이 없는 품목에서 대부분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국내 농수산물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소비자 선택권 확대
 - * ▲대추야자·카놀라유(즉시철폐), ▲어류 기름(즉시철폐 또는 5년철폐), ▲대두유·바이오디젤(10년 철폐)

2. 상품 협정문

1. 주요 결과

- **(전반)**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상품협정문에 최종 합의
 - 양측은 발효시점의 기준세율 유지(standstill), 상품위원회 설치 등 전반적으로 우리 기체결과 유사한 수준의 규범에 합의
 - 통관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상품의 반출입 관련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통관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절차 포함
- **(기타)** 일방이 수출통제 등 비관세조치 채택시 관련 정보 및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발효후 상품양허 추가개선 가능성을 반영

2. 의의 및 기대효과

- **(의의)** 상품양허에서 합의한 자유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역의 예측가능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협정문 마련
- **(기대효과)** UAE측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속한 협의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 추후 우리 관심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철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위원회를 통한 협정의 원활한 이행 담보 가능

3. 무역구제

- **(전반)** 양측은 포괄적인 양자·다자 세이프가드 규범에 합의하고,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해서는 WTO협정 수준의 의무를 재확인
- **(세이프가드)** 사전통보 절차를 포함하여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향상하고, 양자협의를 실시·요청할 있는 근거를 마련
 - * **(통보)** 양자 SG·잠정조치 적용 및 연장시, 양허 정지 후 합당한 기한내
 - (협의)** 양자 SG 적용 이전 및 글로벌 SG 조사개시 이후 협의 기회 제공
- **(기대효과)** 시장개방으로 인한 우리 업계의 피해 구제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기업이 UAE측 조사에 대비 및 협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4-1. 원산지 규정

□ [농축수산물] 엄격한 원산지 기준 설정

- (완전생산기준*) 동물성 생산품(육류, 낙농품 등)의 경우, 역내에서 일정기간 사육된 동물의 생산품인 경우에만 완전생산으로 인정
 - ※ 생산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한 국가 내에서 수행되었을 때 원산지로 인정
- 산동물을 수입하여 사육기간 없이 바로 생산한 동물 생산품도 해당 국가 원산지로 인정하는 UAE측 기체결*과 달리 엄격한 기준 도입
 - * UAE-인도, UAE-이스라엘, UAE-인도네시아
- (품목별 원산지 기준) 농축수산물은 대부분 완전생산기준으로 합의
 - (치즈, 조제분유)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치즈 등 낙농품 및 조제분유 생산시 역내산 원유·재료만 사용할 경우 원산지 인정
 - (김 조제품) 국내 수산업 활성화 및 수출증대를 위해 김 조제품 (조미김, 김부각 등) 생산시 역내산 김 사용시에만 원산지 인정
 - * 김은 '19년부터 수산 식품 중 수출 1위를 유지

☞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하는 우리 농축수산물은 역내산으로 쉽게 인정되어 對UAE 수출 유리

☞ 대부분 수입하는 UAE 농축산물은 역내산으로 불인정되기 쉬워 對한국 수입 제한

□ [공산품, 석유화학제품] 우리가 경쟁력이 높은 공산품, 석유화학 제품은 대부분 역외산 재료를 활용하므로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

- (부가가치기준*) 본선인도가격(FOB) 적용시 우리 기체결과 같이 40%, 공장도가격(EX-WORK) 적용시 35%로 규정
 - ※ 역외산으로 제품 생산시 해당 국가 원산지로 판단하는 실질적 변형 발생 여부 판단 기준
- 공산품의 경우 본선인도가격, 공장도가격 중 택일 가능하도록 하여 수출업체가 원산지 인정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확대
- 공장도가격 적용시 부가가치기준을 완화하여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는 우리 업체가 원산지 인정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 (본선인도가격) 화물을 수출항에서 매수자가 지정한 배에 인도할 때의 가격
 - * 공장도 가격 = 본선인도가격 - (기타경비 + 국내운송비 + 보험료 등)

- **(미소기준*)**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가격의 15% 이하일 경우, 최종재를 원산지로 인정
 - ※ **(미소기준)** 비원산지 재료가 미미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 기체결 대비 **미소기준을 완화***하여 원산지 인정 용이
 - * **(우리 기체결)** 일반품목은 가격기준 10%(한-칠 8%), 섬유류(HS50-63)는 중량기준 10%(한-미/인 7%, 한-칠/싱 8%)까지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 허용
 - － 다만, 섬유제품은 저렴한 역외산 재료 유입에 따른 국내 산업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엄격한 기준인 10%로 별도 합의*
 - * 섬유류의 경우 업계에서 함께 사용하는 중량 기준(10%)도 추가 합의
- **(품목별 원산지 기준)** 우리 주력 수출제품은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하여 업계 편의성 제고
 - － (석유화학제품) 역외산 중유를 수입해 화학반응 공정으로 가공하여 석유화학제품(휘발유, 경유 등)을 생산해도 원산지 인정

4-1. 원산지 절차

- **[원산지증명]** 협정 발효 2년내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 작업반 구성 및 보안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적 원산지 증명 반영
- **(발급기한·경과규정)** 증명서 발급기한(선적후 5근무일 내) 및 협정 발효일에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12개월 소급 적용)
- **(제출증명 생략)** 소액물품(1,000\$ 이하)의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을 면제하는 등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부담 경감
- **[특혜관세 (사후)신청]** 수입통관시 특혜대우를 신청하되, 착오로 신청 누락시 1년 내 사후신청 허용 등 기업친화적 규정 반영
- **[검증]** 우회수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국 요청시 수출국이 서면 검증(간접)하고, 필요시 수입국이 방문검증(직접) 하는 방식 합의
 -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청자 편의 제고 및 분쟁예방 등을 위하여 통보기한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서면검증 결과 통보: 6개월, 방문검증 결과 통보: 검증 방문 끝난 후 3개월

5. 서비스 양허

1. 주요 결과

- UAE측은 우리측 관심분야인 온라인 게임, 의료, 시청각, 건설 분야 등에 대해 기체결 FTA 최고 수준으로 개방
 - (온라인 게임) UAE FTA 최초로 온라인게임 서비스 시장을 개방
 - 게임 이용시간 및 지출액이 가장 높은 중동지역에서 온라인 공급, 직접진출 등을 통한 우리 게임 기업들의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의료 서비스)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 허용
 - 산후조리, 물리치료 서비스 개방으로 한국 의료시스템의 수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발판 마련
 - (시청각 서비스) UAE 기체결 FTA 최고수준으로 시청각 서비스 개방
 - 한국 업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영화, 음악 등 문화 콘텐츠 확산 및 K-컬처 시장규모 확대 기반 마련
 - (건설 서비스) UAE 기체결 FTA 최고수준으로 건설 서비스 개방
 - UAE가 추진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대
- * '22년 기준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실적 누적 2위 UAE(832억 달러)
- UAE 기체결 FTA 최고 수준의 국내규제 규범을 반영하여 UAE 진출 우리 기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담보
 - 면허, 자격 승인절차 시 진행상황 및 결과 통보, 부당한 절차 지연 금지 등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2. 평가 및 기대효과

- (평가) 우리측 최우선 관심분야인 의료, 온라인게임, 시청각, 건설 등 분야에서 UAE 기체결 최고 수준의 시장 개방 목표 달성
- (기대효과) 우리 기업들이 UAE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수 있게 되었으며, K-컨텐츠 확산 및 관련 상품 수출 활성화 기대

6. 정부조달

- **(협정문)** UAE(WTO GPA 비당사국)와 WTO와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
 - **(주요 원칙)** 한국 공급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내국민대우) 및 본 조달 계약과 무관한 추가 조건을 요구(대응구매) 금지*
 - * 부속서 상 예외로 명시한 대응구매요건 이외 다른 대응구매요건 요구 금지 효과
 - 양허한 정부조달절차(공고, 입찰서류 제출 등)은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
 - 이익 상충 회피 및 부패 관행 방지 통해 조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절차적 투명성)** 각국 조달 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별 조달 공고가 온라인 단일창구를 통해 무료로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
 - 조달기관이 공고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 및 공급자가 입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입찰 기한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 또한 공급자 참가자격을 조달 수행에 필수적 조건으로 한정하고, 낙찰 실적 또는 사전업무 경험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
 - **(국내 구제절차)** 조달 관련 문제 발생시 사법 기관 또는 독립적 심사기구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보장
- **(시장 접근)** 양측 모두 중앙정부기관에 대해 기체결 수준으로 개방
 - **(양허 기관)** 양측 모두 중앙정부기관만 개방
 - **(양허 금액)** 양측 모두 기체결 수준으로 합의
 - * (韓) △상품·서비스 SDR 130,000, △건설서비스 SDR 5,000,000
 - (UAE) △상품·서비스 SDR 134,000, △건설서비스 SDR 5,844,000
 - **(양허 범위)** 양국은 기체결 수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 개방
 - **(양허 예외)** 양국은 모두 자국법상 예외 사항을 명시 (기체결 수준)

7. 디지털 무역

- UAE 기체결 FTA 최초로 국경간 정보이전 허용 및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 마련
 - (무관세/비차별 대우)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영구 무관세 및 디지털제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의무 약속으로 K-콘텐츠 수출의 안정성 및 확대 기대
 - (정보 이전) 국경간 정보 이전을 허용하여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내 이전 가능
 -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서버 등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가 금지되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부담 완화
 - (전자상거래 촉진) 전자 서명·인증의 상호운용성 제고, 전자결제 촉진 등을 통해 화장품·식품 등 현지 인기가 높은 한국 제품의 전자상거래 판매 증가 기대
- * UAE는 중동지역 전자상거래 선두주자로, 전자상거래 매출은 '20년 39억불 기록, '25년까지 80억불로 성장 예상
- (협력) 디지털 정부*, 디지털 ID, 핀테크, AI 등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 * 23년 2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UAE측과 디지털 전환 분야 고위급 MOU 체결
 - (핀테크) 핀테크 솔루션 개발 증진과 양국 핀테크 스타트업간 협력 장려
 - (인공지능) 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과 관련된 이니셔티브, 규제 및 정책에 대한 대화 및 경험 공유를 통한 협력 강화

8. 경제 협력

-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공급망·디지털·바이오경제 등 新통상의제를 포함한 14개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 마련
- *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 (에너지·자원) UAE측은 자국 CEPA 최초로 대체·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공급망 등 에너지·자원협력을 본문 및 부속서로 포함
- (스마트팜) 우리측 유망분야이자 UAE측 주요 관심분야로서, 기존 협력 챕터에 포함된 농업협력을 구체화하여 실질적 협력 기반 구축
- (바이오) 연구소·기업·투자자 간 매치메이킹 및 공동연구 지원, 평시 및 위기시 공급망 협력 강화, 역량배양·전문인력교류 등의 협력을 내용으로 한 바이오 분야 경제 협력을 최초로 포함

9. 중소기업 협력

- (주요 내용) 우리 양자 FTA 최초로 중소기업 협력을 별도 챕터로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특성과 유망분야에 맞춘 협력을 규정
- (협력 의무) 중소기업 지원센터 건설, 여성·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등
- (이행 수단) 연 1회 이상 중소기업위원회 개최

10. 투자원활화 협력

- (주요 내용) 우리 FTA 최초로 투자원활화 협력을 별도 챕터로 구성, UAE가 300억불 투자 계획 이행을 위한 협력 강화 기반 마련
- (협력 의무) 투자 관계 모니터링, 투자 증진 및 장애 제거를 위한 노력 등 양국간 투자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할 의무
- (이행 수단) ①연 1회 이상 투자원활화 위원회 개최, ②다른 당사국의 투자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 시행 전 사전협의 노력

11. 지재권

1. 주요 결과

-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 및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집행 강화에 합의하여, UAE 기체결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규범 마련

○ **(저작권)** 저작권·저작인접권자 세부 권리 보장*에 합의

* 복제·배포·공중전달권 등을 보장하는 저작권 국제조약(베른 로마·WCT·WPPT)의 준수 의무에 합의

- 권리관리정보 보호, 기술보호조치 우회 금지, 저작권자 추정* 등 저작권 보호 강화에 중요한 조항 추가에도 합의

* (권리관리정보) 저작물에 부착된 저작권자 식별 정보를 보호하고 침해행위 처벌 (기술보호조치)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이용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 (저작권자 추정) 민사·형사·행정 절차에서 저작물, 저작인접물에 저작자로 성명이 표시된 자를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 **(상표·디자인)** 우리측이 제안한 △유명상표 침해시 구제조치, △악의적 상표 등록 거절, △부분디자인 보호에 합의하여 상표·디자인 규범 제고

○ **(특허)** △특허 허여대상, △특허 신청·취소 절차 상세 규정에 합의

○ **(집행)** 우리측은 △TRIPS 집행조항 이행 의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집행 추가를 설득하여, UAE 기체결 중 가장 높은 집행규범 마련

- 또한 우리측은 디지털 환경 하의 저작권 보호 조항*을 신규 제안하여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방지·대응을 위한 규범 도입

* △악의적 도메인네임 등록 대응,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2. 기대 효과

□ UAE 內 K-콘텐츠 소비 및 소비재의 對UAE 수출이 증가 중인 바,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등 지재산 보호에 기여

* UAE 해외 드라마예능 중 韓 콘텐츠 소비 1위(22), 韓 화장품 수출 증가(17년 \$15백만→22년 \$43백만)

○ 특히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규범 도입을 통해 증가하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12. 통관

1. 주요 결과

① **(사전심사)** 우리 수출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위해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등에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

- 신청자 편의를 위해 심사 회신기한(최대 90일)을 명시
- 다른 기업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심사결과 인터넷 공개 의무
- ② **(물품반출)** 국내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기간 내 반출하고, 부패성 상품에 대한 검사 우선순위 설정 조항 추가
 - 물품 미반출시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지하고, 세관통제 하에 보세 물품의 국내 이동을 허용하는 등 최근 국제논의 반영
- ③ **(특송화물)** 특송화물의 통관 차별성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빨리 반출하도록 합의
- ④ **(사후심사)** 신속한 물품 반출을 위하여 사후심사* 조항 반영
 - * 관세법 §38조②에 따라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심사
- ⑤ **(협지기구)** 현지 통관 및 분쟁해결 신속화를 위한 위원회 마련
 - 원산지 규정 및 통관 관련 논쟁 발생시 위원회에서 해결

2. 평가 및 기대효과

- 기체결 FTA, WTO TFA 수준으로 협정문을 타결한 바, UAE와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원활한 무역 및 통관 기반 마련

13. 위생 · 검역(SPS)

1. 주요 결과

- ① **(조항 간결화)** WTO SPS 협정 수준의 간결한 문안으로 상호 합의
 - UAE-인도 SPS 협정문과 같은 상세한 문안*보다 WTO SPS 협정 수준에서 간결하고 포괄적으로 SPS 문안을 규정**하는 것에 합의
 - * 위험분석, 지역화, 동등성, SPS 위원회, 협의 등의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상세 규정
 - ** 정의, 목적, 범위, 일반조항(FTA 분쟁해결 절차 미적용 포함), 접촉선 및 권한당국

- ② **(분쟁해결)** 별도의 FTA 분쟁절차 미적용(양심제인 WTO 분쟁절차 적용)
 - 한-미, 한-중 등 기체결 FTA에서 우리측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관되게 제안한 FTA SPS 분쟁해결절차(단심제) 미적용 조항 관철
- ③ **(정보교환, 협의 등)** 투명성 관련 의무 수준 합의 및 의미 명확화
 - 상호 관심이 있는(of mutual interest) 정보를 교환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upon request) 접촉선을 통해 SPS 현안에 대해서 협의

2. 평가 및 기대효과

- WTO SPS 협정 수준으로 별도 FTA 분쟁해결 절차는 적용되지 않도록 합의하는 한편 투명성과 협력을 증진하는 협의 기반 마련